

# 노재보험 청구를 위한 가이드북

<제2편>

노재보험급부의 개요  
각종보험급부의 내용

노재보험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됩니다.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물론 유학중의 아르바이트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팜플렛은 노재보험급부의 개요와 각 보험급부 내용에 대해서 해설한 것입니다.

지급 요건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하면 받을 수 없는 급부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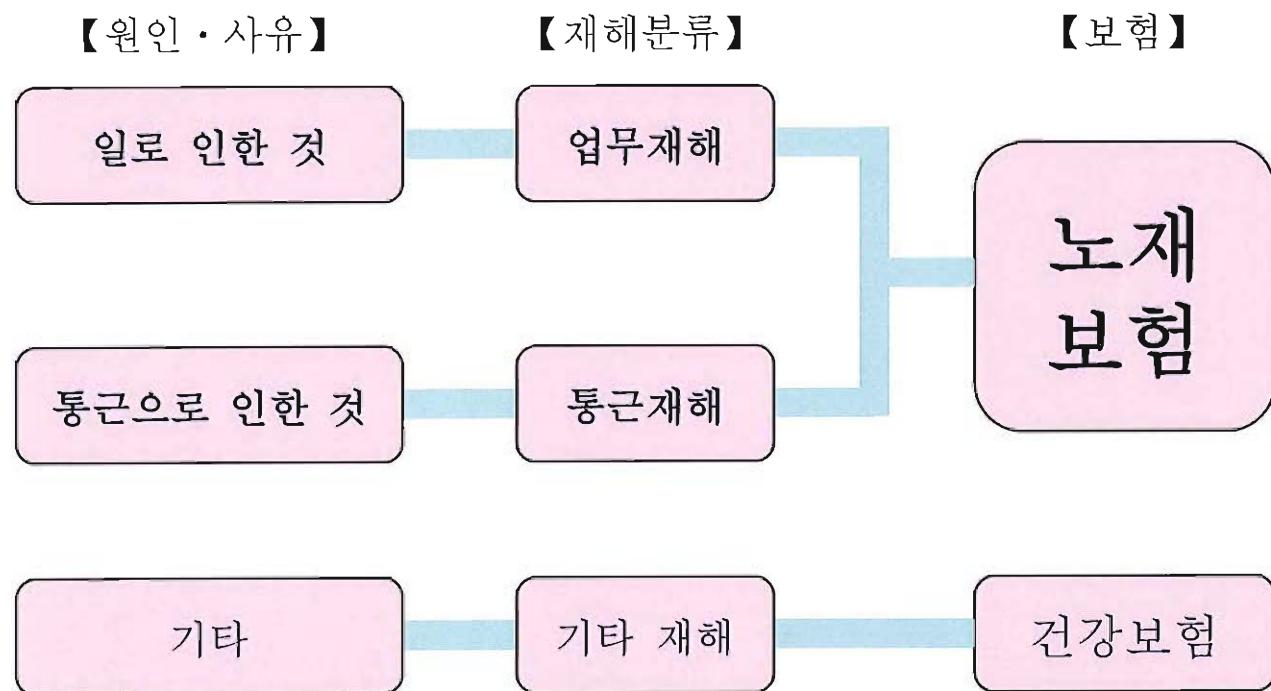
보험급부의 개요	P3
요양(보상)급부	P13
휴업(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	P15
장해(보상)급부	P17
유족(보상)급부, 상제료	P25
개호(보상)급부	P32
기입 예	P35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보상과

## 노재 보험이란

노재 보험이란 노동자가 일(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사망한 때에 치료비 등 필요한 보험 급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취로하는 이상 노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 노동재해에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노재보험급부의 종류

- ◆ **요양(보상)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을 받을 때의 급부
- ◆ **휴업(보상)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을 위하여 일을 할수 없어서 임금이 없을 때 받는 급부
- ◆ **상병(보상)연금:**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 요양 개시후 1년6개월이 지나도 상병이 치유(증상 안정)되지 않아 장해의 정도가 상병등급에 해당 될 때의 급부
- ◆ **장해(보상)급부:**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상병이 치유(증상 안정)되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았을 때의 급부
- ◆ **유족(보상)급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급부
- ◆ **상제료·상제급부:** 노동자가 사망하여 상제를 올릴 때의 급부
- ◆ **개호(보상)급부:**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일정 장해로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을 때의 급부

## 【용어의 정의①】

### 업무재해

업무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당한 상병(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업무와 상병간의 사이 일정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업무상」이라고 합니다.
-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와 연수생은 원칙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업무상의 부상이란

어떠한 재해가 업무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다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고려합니다.

##### <1> 사업장 시설내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소정 노동시간내와 임업시간내 사업장 시설내(회사 사무소·공장 내)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의 경우에는 업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노동자가 업무중의 사적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
- ② 노동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③ 노동자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 <2> 사업장 시설내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휴식시간이나 근무시간 전후 등 업무와 상관없는 시간에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재해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시설·설비와 관리상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또 화장실 등 생리적 행위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 <3> 사업장 시설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출장이거나 영업 등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재해로 인정 됩니다.

## ◇업무상의 질병이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칙상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 됩니다.

### <1> 노동을 하는 장소에 유해인자가 존재 할 경우

유해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신체에 과도의 부담이 되는 작업 등 업무내에 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석면(아스베스토)등

### <2> 건강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유해인자 환경에 처해 있을 경우

### <3> 발증의 경과, 상태가 의학적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가 업무에 내재한 유해인자에 접촉한 결과 발증 합니다. 그러기에 유해인자 환경에 처해 있은 후에 발증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발증의 시기는 유해인자의 특성과 접촉조건에 따라 달립니다.

## 【용어의 정의②】

### 통근재해

통근재해란 노동자가 통근에 의한 노동자의 상병 등  
을 말합니다.

#### ◇통근이란

근무에 관하여 다음 ①~③의 이동을 합리적인 경로 및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주거와 근무장소(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장소)간의 왕복
- ②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해진 근무장소로부터 다른 근무장소로의  
이동(복수 취업자의 사업장간 이동을 가리킴)
- ③ 단신부임처 주거와 귀성처 주거간의 이동

#### 통근의 형태

※2 및 3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  
십시오.

##### 1 통상의 경우

주 거

취업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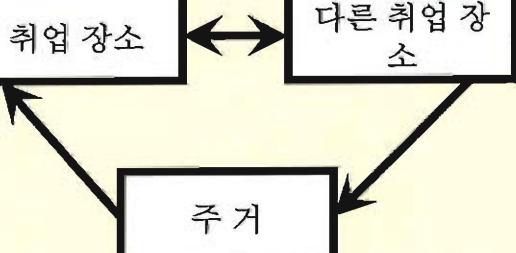


##### 2 복수 취업자의 경우

취업 장소

다른 취업 장  
소

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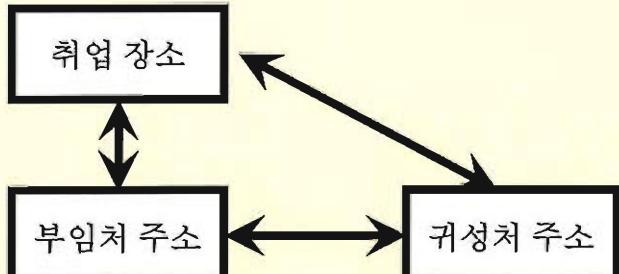


##### 3 단신 부임자의 경우

취업 장소

부임처 주소

귀성처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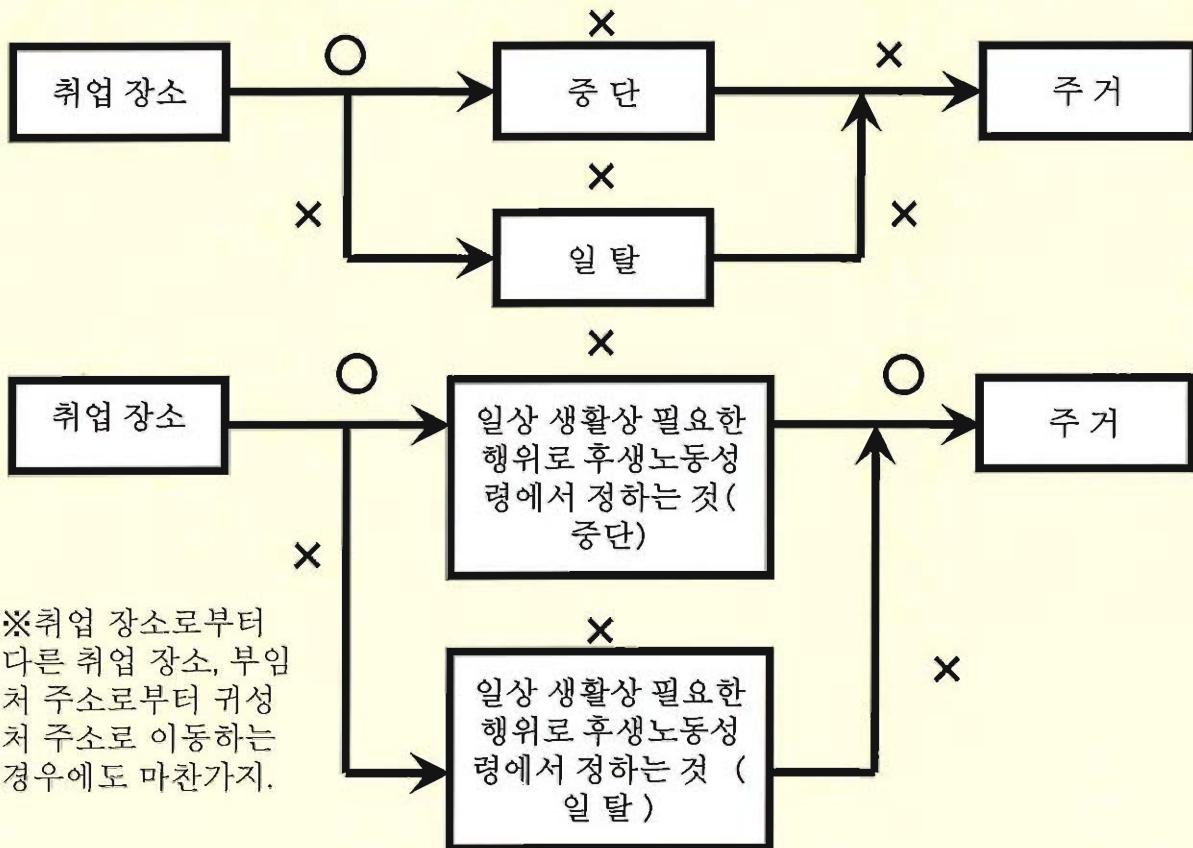
## ◇ 통근의 범위

이동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경우는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와 그 후의 이동은 통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품 구입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위가 최소한 범위내의 경우에는 합리적 경로로 돌아온 후이면 다시 통근으로 취급 됩니다.

### 통근의 범위

- ..... 통근의 범위로써 인정받는 것
- ✗ ..... 통근의 범위로써 인정받지 않는 것



## ◆급부 기초 일액이란

급부 기초 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액입니다.(노동기준법 제12조)

평균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이를 이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의 3개월간에 그 노동자에 대해 지급한 임금의 초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휴일 등을 포함한 날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불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급 된 임금, 보너스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 된 임금 등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상·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의사의 진단으로 질병이 확정 된 날을 말하지만 임금 마감일이 정해졌을 때는 그 직전의 임금 마감일이 이에 해당 됩니다.

### [예외]

① 평균임금 상당액을 급부 기초 일액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산정방법에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외의 상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b) 진폐 환자가 분진 작업 이외의 작업 전환한 경우 등

② 휴업(보상)급부에 관한 휴업 급부 기초 일액에 대해서는 요양을 시작 한지 1년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연령 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 급부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불되는 최초의 달로부터 연령 계층별의 최저한도액 및 최고한도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급부 기초 일액의 계산 예

매월 20만엔의 임금(임금마감일은 매월 말)으로 10월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20\text{만엔} \times 3\text{개월} \div 92\text{일} (7\text{월 } (31\text{일}) + 8\text{월 } (31\text{일}) + 9\text{월 } (30\text{일})) \approx 6,522\text{엔}$$
$$6,522\text{엔} \times 80\% \approx 5,217\text{엔}$$

→ 휴업 1일당 급부 기초 일액의 80%에 해당하는 5,217엔이 지급됩니다.

※ 「임금」에는 임시적으로 지불된 임금,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너스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은 유족 특별 연금 등의 액을 정한 경우의 「산정 기초 일액」에 반영됩니다.

## ◇ 산정 기초 일액이란

산정 기초 일액이란 원칙적으로 업무상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이 확정된 날 이전 1년간에 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특별 급여의 총액을 산정 기초 연액으로 해서 365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입니다.

특별 급여란 급부 기초 일액 산정의 기초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보너스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결혼수당 등 임시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 급여의 총액이 급부 기초 연액(급부 기초 일액의 365배에 상당하는 액수)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연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정 기초 연액으로 됩니다. (한도액 150만엔)

##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①】

# 뇌·심장질환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혈관병변이 주로 가령, 식생활, 생활환경 등 일상생활에 의한 제요인이나 유전 등에 의한 요인으로 그것이 서서히 발증하는 것이지만 일이 주원인으로 발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심장질환이 「확실히 업무의 과중부하」로 인해 발증한 경우에는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과중부하란 의료경험칙에 비추어 뇌·심장질환 발증의 기초가 되는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서 현저하게 중약 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 뇌혈관 질병

- 뇌내출혈(뇌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 뇌증

#### ○ 허혈성 심질환 등

- 심근경색
- 협심증
- 심장정지(심장성 돌연사 포함)
- 박리성 대동맥류

### [노재 인정조건]

다음 어느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 1. 비정상적인 현상

발증직전부터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상태를 시간적·장소적으로 명확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조우

※ 업무에 관련한 중대한 인신사고 등에 직접 간여하여 현저히 정신적 부담을 받았거나 사고발생으로 구조활동과 사고처리에 참여하여 현저히 신체적 부담을 받았을 경우 등입니다.

#### 2. 단기간의 과중한 업무

발증의 가까운 시기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

(1)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사이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경우 (2) 발증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사이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발증전 약 1주일간 이내에 과중한 업무가 계속 된 경우에는 업무와 발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 3.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

발증전 장기간에 거쳐 현저히 피로축적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

시간외 노동이 월 45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긴 시간은 관련성이 강하며 발증전 1개월간 100시간, 또는 2~6개월간 평균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이 있을 경우는 업무와 발증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

※ 2, 3에 관해서는 노동시간 이외에도 근무형태 등(불규칙적인 근무·구속되는 시간이 긴 근무·교대제 근무·심야근무) 작업환경(온도환경·소음·시차) 정신적 긴장 등도 업무로 인한 부하요인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②】

### 정신장해

정신장해는 외부로부터 심리적 부하(스트레스)와 그 심리적 부하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 강약과의 관계로 발병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신장해가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하※로 발증했을 경우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하란 객관적으로 대상의 질병을 발병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강한 심리적 부하를 가리킵니다.

#### [노재 인정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 1. 인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해를 발병하고 있음

국제질병분류 제10회 수정판(ICD-10)제V장「정신 및 행동의 장애」에 분류되는 정신장해입니다.(치매증이나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 2. 정신장해 발병전 약 6개월간에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 될 경우

(예) 심한 괴롭힘·따돌림·폭행·업무의 내용·업무량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등

※따돌림이거나 성희롱과 같은 상황이 반복 될 때에는 발병의 6개월 보다 그 전에 이미 시작되어 발병 할 때까지 계속 됐을 경우에는 시작 된 시점부터 심리적 부하가 평가 됩니다.

##### 3. 업무이외의 심리적부하나 개체적 원인으로 인하여 정신장해를 발병시켰다고 인정되지 말아야 할 것

사적인 일(이혼, 배우자와의 별거 등)이나 본인 이외의 가족·친족의 일(배우자와 어린이, 부모, 형제의 사망 등)이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정신장해의 기와력과 알콜 의존증 등 개체적 원인의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개체적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③】

### 상지(팔) 장해

팔과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목으로부터 어깨, 팔, 손, 손가락에 거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과 근(힘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지장해란 이러한 염증과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 <대표적 진단명>

- 테니스엘보      ·꿈치터널 증후군      ·회외(내)근 증후군      ·수관절염·건초염
- 손목수근관증후군      ·서경

#### [노재 인정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노재가 인정 됩니다.

#### 1. 상지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위주인 업무에 상당기간(원칙상 6개월 정도 이상) 종사한 후에 발병이 된 것임

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해당 됩니다.

- 1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작업
- 2 상지를 쳐든 상태로 진행되는 작업
- 3 경부, 어깨의 움직임이 적고 자세가 구속되는 작업
- 4 상지 등 특정부위에 부담이 가는 상태로 진행되는 작업

※상지 등 이런 후두부, 경부, 견갑대, 윗팔, 앞팔, 손,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 2. 발증전에 과중한 업무에 종사

발증직전 3개월간에 상지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종사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량이 거의 일정한 경우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동성별로 연령이 비슷한 노동자보다 10%이상 작업량이 많은 날이 3개월간 계속 되었다.

##### ·업무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① 하루의 업무량이 통상의 20%이상 많은 날이 1개월에 10일정도 있으며 그것이 3개월 계속 되었다.(1개월간 업무량의 총량이 통상과 같아도 좋다)

② 하루 노동시간의 3분의 1정도 시간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통상보다 20%이상 많은 날이 1개월에 10일정도 있으며 그것이 3개월정도 계속 되었다.(하루의 평균은 통상과 같아도 좋다)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는가를 판단 할 때 업무량 뿐만아니라 다음의 상황도 고려합니다.

- 장시간의 작업, 연속작업      ·과도의 긴장·타율적이고 과도한 작업 페이스
- 부적절한 작업환경·과대한 중량부하, 힘의 발휘

#### 3. 과중한 업무 종사와 발증까지의 경과가 의학상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

## 【질병별로의 인정조건④】

### 요통

노재보험 대상이 되는 요통은 의학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2종류 중 하나로 각각에 대해 노재인정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노재 인정조건]

##### 1. 재해성 원인으로 인한 요통

부상 등으로 인한 요통으로 다음의 ①,②조건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킬 경우

- ① 허리의 부상 또는 그 부상의 원인이 된 급격한 힘의 작용이 근무중의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 받을수 있어야 함
- ② 허리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증시키거나 또는 요통의 기왕증·기초질환을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 2. 재해성에 의하지 않은 요통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등 허리에 과도의 부담이 가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발증한 요통으로 작업상태와 작업기간 등으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증 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함  
재해성에 의하지 않은 요통은 그 발증원인에 따라 다음의 2종류로 구분하여 판단 됩니다.

###### ◇근육 등 피로가 원인인 요통

다음과 같은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여 근육 등의 피로가 원인이 되어 발증한 요통은 노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약 20kg이상의 무거운 물건 혹은 중량이 다른 물품을 반복하여 중간허리의 자세로 취급하는 업무
- 매일 수시간 정도 허리를 아주 부자연한 자세로 유지하여 수행하는 업무
- 장시간 일어설 수 없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 수행하는 업무
- 허리에 아주 큰 진동을 받으면서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업무

###### ◇뼈의 변화가 원인인 요통

다음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에 상당기간(약 10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함으로 뼈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증한 요통은 노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약 30kg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노동시간의 3분의 1정도 이상 취급하는 업무
- 약 20kg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노동시간의 절반정도 이상 취급하는 업무

※ 뼈의 변화가 원인인 요통이 노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그 변화가 「통상의 가령으로 인한 뼈의 변화 정도를 확실히 초과한 경우」에만 한합니다.

# 요양 (보상) 급부

노동자가 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요양 급부(통근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 급부의 내용

요양(보상) 급부에는 「요양 급부」와 「요양비용의 지급」이 있습니다.

- 「요양 급부」는 노재 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약국 등(이하 「지정 의료 기관 등」)에서 무료로 치료나 약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현물 급부입니다.
- 「요양 비용의 지급」은 근처에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 요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 급부입니다.

급부의 대상이 되는 요양의 범위나 기간은 어느 쪽도 동일합니다. 요양(보상) 급부는 치료비, 입원료, 이송비 등 통상 요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포함되며 상병이 치유(증상 고정)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 ◇ 「치유」란

신체의 제기관·조직이 건강한 때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상병의 증상이 안정되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1)를 실시해서 그 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2)(「증상 고정」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병의 증상이 투약·이학 요법 등의 치료에 의해 일시적인 회복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등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라도 의료 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재 보험에서는 「치유」(증상 고정)라고 판단하며 요양(보상)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란 노재 보험의 요양 범위(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준거)로써 인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실험 단계 또는 연구적 과정에 있는 치료 방법은 여기에서 가리키는 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란 그 상병의 증상 회복·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 청구 수속

### ● 요양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을 받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5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3)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요양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7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16호의 5)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약국으로부터 약제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2)를, 유도 접골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3)를, 침술인 및 뜸치료사, 안마 맞사지 지압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4)를, 방문간호 사업자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5)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지정 의료기관 등을 변경할 때

이미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귀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를 받는 지정 병원 등(변경) 신고」(양식 제6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 병원 등 변경신고」(양식 제16호의 4)를 제출해 주십시오.

## 통원비에 대해서

통원비에 대해서는 상병 노동자의 주거지 또는 근무처로부터 원칙적으로 2km(※1)의 통원이고 다음의 ①에서 ③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으로 됩니다.

- ① 동일 지역내의 적절한 의료기관(※2)에 통원 할 때.
- ② 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내의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있어도 인접한 지역의 의료기관이 통원하기 쉬운 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동일 지역내 및 인접한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벗어나 인접한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

※1 편도 2km 미만이라도 통원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절한 의료기관이란 상병의 진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 시효

요양의 급부에 대해서는 현물 급부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양의 비용은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휴업(보상)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휴업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휴업 급부 (통근재해인 경우)가 제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 급부의 내용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휴업 제4일째부터 휴업(보상)급부와 휴업특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①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인해
- ②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 ③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보상) 급부=(급부 기초 일액의 60%) × 휴업 일수
- 휴업 특별 지급금=(급부 기초 일액의 20%) × 휴업 일수

또한 휴업 첫날부터 제3일째까지를 대기 기간이라고 하며 이 사이에는 업무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근거해 휴업 보상(1일당 평균 임금의 60%)을 하게 됩니다.

또한 통원을 위해 노동자가 소정 노동 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할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에서 그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액을 공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휴업보상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8호) 또는 「휴업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6)을 제출해 주십시오.

### 시효

휴업(보상) 급부는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 날마다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상병 (보상) 연금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날 이후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상병 보상 연금(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상병 연금(통근 재해인 경우)이 지급됩니다.

- (1)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낫지 않았을 것.
-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 등급표의 상병 등급에 해당할 것.

### 급부내용

상병 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상병 특별 지급금 및 상병 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상병 등급	상병(보상)연금	상병 특별 지급금(일시금)	상병 특별 연금
제1급	기초 일액의 313일분	114만엔	산정 기초 일액의 313일분
제2급	" 의 277일분	107만엔	" 277일분
제3급	" 의 245일분	100만엔	" 245일분

#### 연금 지불월

상병(보상)연금은 상기(1),(2)의 지급조건에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지급되며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6기에 각각의 이전 2개월분이 지불됩니다.

※ 상병 등급이 제1급 또는 제2급인 흉복부 장기·정신·신경 장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분은 개호(보상) 급부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P32)

### 청구수속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부지급의 결정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직권에 의한 것으로 청구 수속은 필요하지 않지만 요양 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해도 상병이 낫지 않은 때에는 그 후 1개월 이내에 「상병 상태 등에 관한 신고」(양식 제16호의 2)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해 (보상) 급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았을 때 신체에 일정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장해 급부(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 급부내용

잔존 장해가 장해 등급표에 설명된 장해 등급에 해당될 때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 장해 등급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연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연금

### ● 장해 등급 제8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급부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	
제1급	연금	급부기초일액의 313일분	일시금	342만엔	연금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2급	"	277일분	"	320만엔	"	" 277일분		
제3급	"	245일분	"	300만엔	"	" 245일분		
제4급	"	213일분	"	264만엔	"	" 213일분		
제5급	"	184일분	"	225만엔	"	" 184일분		
제6급	"	156일분	"	192만엔	"	" 156일분		
제7급	"	131일분	"	159만엔	"	" 131일분		
제8급	일시금	503일분	"	65만엔			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503일분
제9급	"	391일분	"	50만엔			"	" 391일분
제10급	"	302일분	"	39만엔			"	" 302일분
제11급	"	223일분	"	29만엔			"	" 223일분
제12급	"	156일분	"	20만엔			"	" 156일분
제13급	"	101일분	"	14만엔			"	" 101일분
제14급	"	56일분	"	8만엔			"	" 56일분

※ 동일 재해에 의해 이미 상병 특별 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됩니다.

※ 장해등급이 제1급 혹은 제2급의 흉복부장기, 정신·신경 장해를 가진 분이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보상)급부를 수급 할수 있습니다. (→P32)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장해보상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0호) 또는 「장해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7)를 제출해 주십시오.

### 시효

장해(보상)급부는 상병이 나온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장해 등급표

##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1 장해 등급표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급	해당 장해가 있는 기간 1년당 급부 기초 일액의 313일분	1 양눈을 설명한 자 2 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을 잃어버린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4 흉복부 장기 기능에 뛰렸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 5 삭제 6 양쪽 상지를 팔꿈치 관절이상 잃어버린 자 7 양쪽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8 양쪽 하지를 무릎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9 양쪽 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제4급	동 213일분	1 양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3 양쪽 귀의 청력을 전부 잃어버린 자 4 하나의 상지를 팔꿈치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5 하나의 하지를 무릎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6 양손의 손가락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자 7 양발을 리스프랑 관절이상 잃어버린 자
제2급	동 277일분	1 한 눈을 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양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3 양쪽 상지를 손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4 양쪽 하자를 발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제5급	동 184일분	1의 1 한 눈이 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1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1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2 하나의 상지를 팔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3 하나의 하자를 발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4 하나의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5 하나의 하자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6 양발의 발가락 전부를 잃어버린 자
제3급	동 245일분	1 한 눈을 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을 잃어버린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자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5 양손 손가락 전부를 잃어버린 자	제6급	동 156일분	1 양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3 양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의 2 한 귀의 청력을 전부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알아들을수 없을 정도로 된 자 4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운동 장해를 남긴 자 5하나의 상지의 3대 관절 중의 2관절을 쓸 수 없는 자 6하나의 하지 3대 관절 중의 2관절을 쓸 수 없는 자 7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제8급	급부 기초 일 액의 503 일분	1한쪽 눈이 설명되고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자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4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3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할수 없게 된 자
제7급	동 131일분	1한 눈을 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양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2의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를 남겨서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4삭제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서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6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한 3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자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자 8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이상을 잃어버린 자 9하나 이상의 상지의 의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10하나의 하지에 의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11양발의 발가락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자 12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긴 자 13양쪽 고환을 잃어버린 자	제9급	동 391일분	1양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양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4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자 5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6음식 씹기 및 언어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6의 2 양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것 6의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듣기가 곤란할 정도로 된 자 7한 귀의 청력을 전부 잃어버린 자 7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를 남기고,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일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는 자 7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기고 가능한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는 자 8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9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0한 발의 제1 발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1한 발의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1의 2 외모에 상당 정도의 흉한 모습을 남긴 자 12생식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제11급 동 223일 분	1양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 자 2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3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자 3의 2 치아 10개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3의 3 양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5척추에 변형을 남긴 자 6한 손의 검지 손가락, 중지 또는 환지를 잃어버린 자 7삭제 8한 발의 제1 발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쓸 수 없게 된 자	
제10급	동 302일분	1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1의 2 정면을 바라볼 때 복시가 남는 자 2음식 쟁기 또는 언어 기능에 장해를 남기는 자 314개 이빨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3의 2 양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듣기가 곤란할 정도로 된 자 4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된 자 5삭제 6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7하나의 하지를 3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8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9하나의 상지 3대관절중의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자 10하나의 하지 3대관절 중의 1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자	제12급 동 156일 분	1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운동 장해를 남기는 자 2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자 3치아 7개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4한 귀의 콧바퀴의 대부분을 결손 한 자 5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변형을 남긴 자 6한 상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7한 하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8장관골에 변형을 남긴 자 8의 2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자 9한 손의 검지, 중지 또는 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0한 발의 제2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제2 발가락을 포함해 2개의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애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또는 제3의 발가락 이외의 3개의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11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남긴 자 13삭제 14외형에 추한 형상을 남긴 자	제13급	동 101일분	10한 발의 제2 발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자, 제2 발가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자 또는 제3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자
제13급	동 101일분	1한 눈의 시력이 0.6 이 하로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2의 2 정면시 이외에서 복시를 남기는 자 3양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눈썹이 빠진 자 3의 2 치아 5개이상에 대해 치과 치의를 가한 자 3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4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5한 손의 엄지손가락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자 6삭제 7삭제 8한 하지를 1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9한 발의 제3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자	제14급	동 56일분	1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눈썹을 남긴 자 2치아 3개 이상에 대해서 치과 치의를 가한 자 2의 2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상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를 남긴 자 4하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를 남긴 자 5삭제 6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자 7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을 굽신 할 수가 없게 된 자 8한 발의 제3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9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긴 자 10삭제

#### 비고

-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시시력표에 따름.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대해서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은 자란 엄지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 그 외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가리킨다.
-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가락의 미절골의 절반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지절간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란 그 전부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란 제1 발가락은 미절골의 절반 이상 그 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 이상 잃은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제1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 장해 (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1회에 한해 장해(보상)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급부내용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은 장해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액 가운데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장해(보상)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을 경과한 이후의 분은 연 5푼의 단리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장해 등급	사전지불 일시금액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200일분, 1,340일분
제2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190일분
제3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1,050일분
제4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920일분
제5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790일분
제6급	"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670일분
제7급	" 200일분, 400일분, 560일분

## 청구수속

원칙상 장해(보상)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장해 보상 연금·장해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 양식 제10호)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장해(보상) 연금을 받은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최고한도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 시효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상병이 나은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급부내용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아래의 일정액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입니다.

장해특별연금에 관해서도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하게 차액 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특별연금 차액 일시금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1,340일분	산정기초일액의 1,340일분
제2급	" 1,190일분	" 1,190일분
제3급	" 1,050일분	" 1,050일분
제4급	" 920일분	" 920일분
제5급	" 790일분	" 790일분
제6급	" 670일분	" 670일분
제7급	" 560일분	" 560일분

### ●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의 (1) 또는 (2)에 게재된 유족이고 지급을 받는 순위는 다음의 (1), (2)의 순서 [유족 중에서는 각각(1),(2)에 게재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를 포함.(2)도 동일함.),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37호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 제출에 필요한 첨부자료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서류	호적 등본 또는 초본등의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사망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효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유족 (보상) 급부 상제료(상제 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 유족(보상) 급부가 지급 됩니다.  
또한 상제를 행한 자에게 상제료(상제 급부)가 지급 됩니다.

유족(보상)급부에는 「유족(보상) 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의 2종류가 있습니다.

### 유족 (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은 수급하는 자격을 가진 유족(수급자격자) 중 최우선 순위자(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되는 자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식·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지만 아내 이외의 유족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일정의 고령 또는 연소,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사망 당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고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소위 맞벌이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급권자로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아내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남편
- ②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자식
- ③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부모
- ④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손자녀
- ⑤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조부모
- ⑥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 31일까지의 사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일정 장해가 있는 형제자매
-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
- ⑧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
-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 ※ 일정의 장해라는 것은 장해 등급 제5급 이상의 신체 장해를 말합니다.
- ※ 배우자의 경우 혼인 쇄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식은 태어난 때부터 수급자격자로 됩니다.
- ※ 최우선순위자가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권을 잃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수급권자로 됩니다.
- ※ ⑦~⑩의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수급권자로 되어도 60세가 되기까지는 연금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 급부내용

유족수 등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 유족특별 지급금 및 유족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액수를 등분한 금액수가 각각 수급권자가 받는 금액수가 됩니다.

유족수	유족(보상)연금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유족특별연금
1인	급부 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 이상의 아내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는 아내의 경우는 급부 기초일액의 175일분)	300만엔	산정 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 이상의 아내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는 아내의 경우는 산정 기초 일액의 175일분)
2인	급부 기초 일액의 201일분		산정 기초 일액의 201일분
3인	" 223일분		" 223일분
4인이상	" 245일분		" 245일분

##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보상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2호) 또는 유족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8)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유족(보상)급부와 동일 양식입니다.

●제출에 필요한 첨부 서류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사조서 또는 이러한 것들의 기재 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또는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의 사정에 있던 자인 경우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와 사망 노동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 중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음에 의해 수급자격자로 된 자가 있는 경우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수급자격자중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내가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 부터 계속해서 장해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동일의 사유로 유족 후생 연금, 유족 기초 연금, 과부 연금등이 지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효

유족(보상)연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1) 유족 (보상)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①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 ②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순위자까지 모두 권리를 잃은 때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액(P29)의 합계액이 급부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

### (2) 수급권자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②③)에 대해서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서)로 동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그 수급권자로 됩니다.

- ① 배우자
- ②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③ 그 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④ 형제자매

### 급부내용

#### 상기 (1) 의 ①인 경우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 됩니다.

또한 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 지급되는 외에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정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됩니다.

#### 상기 (1) 의 ②인 경우

급부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 된 유족(보상)연금 등의 합계액을 뺀 차액이 지급 됩니다.

수급권자가 있는 유족 전원에 대해 지불 된 유족특별 연금의 합계액이 산정기초 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 했을 때는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정기초 일액의 1,000일분과 그 합계액과의 차액이 지급 됩니다.(유족 특별 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5호) 또는 유족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9)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일시금의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양식은 유족(보상) 일시금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 ● 제출시에 필요한 첨부 서류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사망 노동자와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a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사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간의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서류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 순위자까지 모두 권리가 잃은 때에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액의 합 계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	상기 b의 서류

※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효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유족(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1회에 한해 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년 정지에 의해 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도 사전지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급부내용

사전지불 일시금의 액수는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중에서 희망하는 액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유족(보상) 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 지난 후의 분은 연 5푼의 단리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 청구수속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유족 보상 연금·유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양식 제1호)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 통지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족(보상) 연금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 시효

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바뀌는 경우(전급)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이유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연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1) 사망했을 때
- (2)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 했을 경우
- (3) 직계 혈족 또는 직계 혼족 이외인 자의 양자(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양자결연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된 경우
- (4) 이연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했을 때
- (5) 자식,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가 된 날 이후의 첫 3월 31일이 종료했을 때 (노동자의 사망 시로부터 계속해서 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때를 제외)
- (6) 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연금·유족 연금 전급 등 청구서(양식 제13호)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유족 특별 연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실시 됩니다.

양식은 전급 등 청구서와 동일합니다.

#### ● 제출에 필요한 첨부서류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것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급자격자와 사망 노동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서류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급자격자 가운데 일정 장해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격자가 되는 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 시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장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자 가운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제료(상제급부)

상제료(상제급부)의 지급대상이 되는 분은 반드시 유족이 아니라도 되지만 통상은 상제를 실시함에 적합한 유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제를 진행할 유족이 없고 사제로써 사망 노동자의 회사에서 상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제료(상제급부)는 그 회사에 대해 지급되게 됩니다.

### 청구내용

상제료(상제급부)의 금액은 315,000엔에 급부 기초 일액의 30일분을 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6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60일분이 지급액으로 됩니다.

###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상제료 청구서(양식 제16호) 또는 상제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10)을 제출해 주십시오.

#### ●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유족(보상)급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하여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효

상제료(상제급부)는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되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개호 (보상) 급부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제1급인 분 모두와 제2급의 정신신경·흉복부 장기의 장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개호 급부(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 1 일정 장해 상태에 해당할 것

개호(보상)급부는 장해 상태에 따라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와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구분됩니다. 상시 개호 또는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해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분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	
상시 개호	<p>①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1급 3·4호, 상병 등급 제1급 1·2호)</p> <p>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양눈을 설명, 장해나 상병 등급 제1급·제2급의 장해를 가진 분</li><li>·양쪽 상지나 하지를 잃어버렸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분</li></ul> <p>등①과 같은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분</p>
수시 개호	<p>①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2급 2호의 2·2호의 3, 상병 등급 제2급 1·2호)</p> <p>②장해 등급 제1급 또는 상병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 분</p>

### 2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을 것

민간의 유료 개호 서비스 등이나 친족 또는 친구·지인에 의해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음이 필요.

### 3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지 않을 것

### 4 노인보건시설, 장애자 지원시설(생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함), 특별 요양노인홈 또는 원자폭탄피해자 특별양호홈에 입소하고 있지 않을 것

이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급부내용

개호(보상)급부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헤이세이30년4월1일 현재)

### (1) 상시 개호인 경우

-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한 금액  
(상한105,290엔)
  -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57,190엔이 지급됩니다.
    -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57,19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57,190엔이 지급됩니다.
    -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57,190엔을 윗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한 105,290엔)

### (2) 수시 개호인 경우

-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한 금액 이 지급됩니다.  
(상한 52,650엔)
-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28,600엔이 지급됩니다.
  -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8,60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28,600엔이 지급됩니다.
  -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8,600엔을 윗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상한 52,65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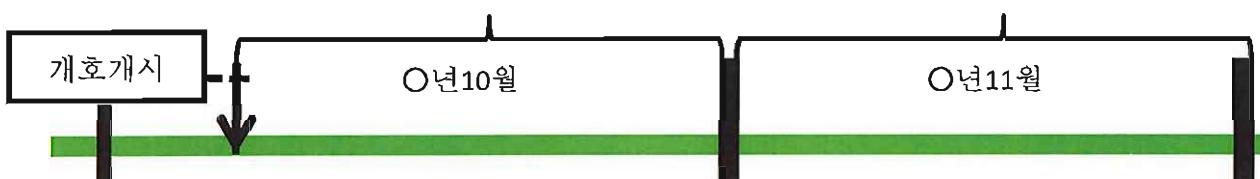
#### ● 월 도중부터 개호를 개시한 경우

- ① 개호 비용을 지불해서 개호를 받은 경우 상한액의 범위에서 개호 비용이 지급됩니다.
- ②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친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은 경우는 해당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10월 도중부터 친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기 시작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률 정액이 지급됩니다.



※청구서의「청구대상 년월」란에는 개호를 시작한 월(이 예에서는 10월분)에 대해서도 기입 해 주세요.

## 청구수속

개호(보상)급부를 청구할 때에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개호 보상 급부·개호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 2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제출에 필요한 첨부 서류

이러한 경우는	해당하는 분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
반드시 첨부할 것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를 받은 일 수 및 비용 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 및 장해 등급 제1급 3호·4호 또는 제2급 2호의 2·2호의 3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회째 이후의 개호(보상)급부를 청구할 때에도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호(보상)급부의 청구는 1개월을 단위로 해서 실시하지만 3개월분을 함께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 시효

개호(보상)급부는 개호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각종 청구서의 기재 예

1. 요양 급부 청구서 (양식 제5호)
2. 요양 비용 급부 청구서 (양식 제7호)
3. 휴업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 (양식 제8호)
4. 장해 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 (양식 제10호)
5.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제15호)
6. 유족 보상 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 제12호)
7. 상제료 청구서 (양식 제16호)
8. 개호 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 (양식 제16호의 2의2)

## 요양급부 청구서 (양식 제5호) (기재 예)

통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16호의 3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 회사로 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세요.

## 요양비용 급부 청구서(양식 제7호)(앞면)(기재 예)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 회사로 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

## 요양비용 급부 신청서(양식 제7호(1) (뒷면)) 기재 예

휴업 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 (양식 제8호) 기재 예

청구인 자신이 기업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  
는 부분입니다.

※ 회사로 부터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제출처 감독서에 상담해 주세요.

## 장해 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0호) 기재 예

樣式第10号 (表面)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자필에 의한 서명의 경우에  
는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 유족 보상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2호) 기재 예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자필에 의한 서명의 경우에  
는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제15호) 기재 예

**样式第15号（表面）**

통근제해의 경우는 양식  
제16호의9

労働者災害補償保険

書請求給申請給時金金金支支支時給時給別別別一一支一補特特族族族遺遺遺

남성은 「男」 여성  
은 「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注意〕

③の死亡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기입을 의뢰 해 주세요.

事業場名称

재해가 발생한 장소, 그 당시의 작업 내용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は、死亡労働者の直接所属する事業場は、現場等の場合に記入して下さい。

청구인의 성명, 생  
년월일, 주소, 피해  
자와의 관계, 장해  
유무를 기재해 주  
세요.

上記により 遺族補償一時金の支給を請求します。  
上記により 遺族特別支給金の支給を申請します。

年 月 日		신청인의 請求人 申請人の (代表者)	우체번호 郵便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方 址
劳働基準監督署長 殿		氏名 이름			
振込を希望する銀行等の名称(郵便貯金銀行の支店等を除く) 이름을 희망하는 은행이나 금고(우체국 예금은행이나 지점 등은 제외)			預金の種類及び口座番号 예금 계좌 번호		
이름	銀行・金庫 농협・漁協・信組	지점이 름	本店 支店 支所	普通・当座 계좌 명의인	号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자필에 의한 서명의 경우에  
는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 상제료 청구서(양식 제16호) 기재 예

同근재해의 경우는 양식 제 16호의10		① 労働保険番号 府県所掌管轄基幹番号枝番号 <small>근로자 보상 보험번호</small>	③ フリガナ 氏名 <small>신청인의 주소</small>	남성은「男」여성 은「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業務災害用		勞働者災害補償保險 葬祭料請求書		
② 年金証書の番号 管轄局種別西暦年番号		④ フリガナ 氏名 <small>死 生年月日 출생일 年月日 (나이 歲)</small>	⑤ 負傷又は発病年月日 年月日 <small>부상 또는 발병날짜 午前 時 分頃</small>	
⑥ 災害の原因及び発生状況 <small>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small>		⑦ 死亡年月日 사망 날짜 年月日		
⑧ 平均賃金 평균임금 円 錢		⑨ 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資料名 첨부서류 그 외의 자료명		
⑩ 事業の名称 年月日 사업주 증명란 事業場の所在地		⑪ 事業主の氏名 (法人その他の団体であるときはその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⑫ 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資料名 첨부서류 그 외의 자료명		郵便番号 우체번호 局番 전화번호 전화번호 局番 신청인의 주소 주소		
上記により葬祭料の支給を請求します。		⑬ 労働基準監督署長 殿 氏名 이름 サイン		
⑭ 振込を希望する銀行等の名称(郵便貯金銀行の支店等を除く) 이름 銀行·金庫 農協·漁協·信組		⑮ 預金の種類及び口座番号 普通·当座 第 계좌번호 名義人 계좌 명의인		
(物品番号 62111)		자필에 의한 서명의 경우에 는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청구인 자신이 기입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 개호(보상)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2의 2) 기재 예

概要第16号の2の2(表面)

## 각 급부의 청구 양식 종류 및 제출처

급부의 종류	업무 재해 통근 재해 별	청구서의 명칭	양식 번호	제출처
요양(보상) 급부	업무 재해	요양보상급부를 위한 요양급부 청구서	5호	병원이나 약국 등을 거쳐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장
	통근 재해	요양보상급부를 위한 요양급부 청구서	16호의 3	
	업무 재해	요양보상급부를 위한 요양급부 청구서	7호	
	통근 재해	요양보상급부를 위한 요양급부 청구서	16호의 5	
휴업(보상) 급부	업무 재해	휴업보상급부 지급 청구서	8호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
	통근 재해	휴업급부 지급 청구서	16호의 6	
장해(보상) 급부	업무 재해	장해보상급부 지급 청구서	10호	
	통근 재해	장해급부 지급 청구서	16호의 7	
유족(보상) 급부	업무 재해	유족보상급부 지급 청구서	12호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서
	통근 재해	유족급부 지급 청구서	16호의 8	
	업무 재해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청구서	15호	
	통근 재해	유족일시금 지급 청구서	16호의 9	
상제료(상제 급부)	업무 재해	상제료 청구서	16호	
	통근 재해	상제료 급부 청구서	16호의 10	
개호(보상) 급부		개호보상급부·개호급부 지급 청구서	16호의 2의 2	





(H31.3)